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숲생태존) 개편 설계 및 체험전시물 제작·설치 과업 내용서

2025년 8월



I

과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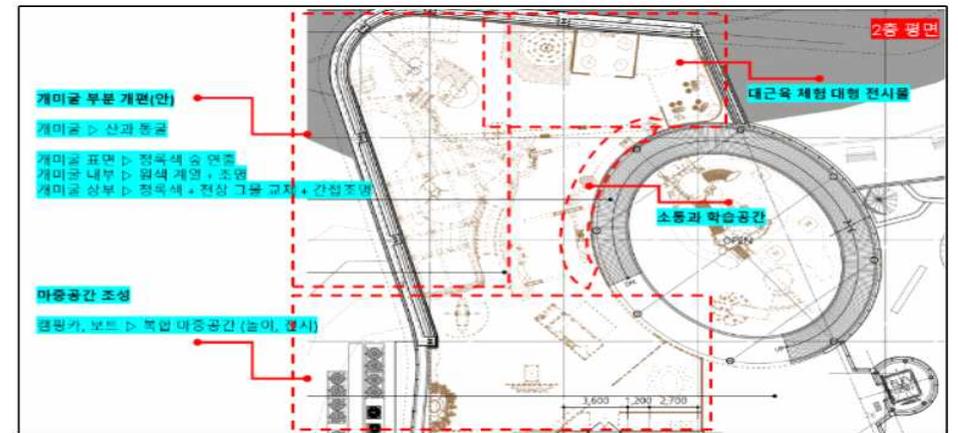
1. 과업명: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숲생태존) 개편 설계 및 체험전시물 제작·설치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02.06.
3. 과업예산: 금370,000,000원(금삼억칠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제료, 저작권료, 물품구입료, 기타 사용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 목적
 - 1) 노후화된 상설전시 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구축
 - 2) 어린이 관람객의 신체 발달 및 교육 효과를 위한 전시 설계 및 시공으로 만족도 제고
 - 3) 박물관의 주제인 '숲'과 '생태'를 이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사는 포용성을 구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시물 제작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숲생태존》(약403㎡)과 입구 복도
 - 내용적 범위
 - 1) 어린이박물관 전시 구성 시나리오에 따른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성과품 도서 작성
 - 2) 어린이 신체 발달을 고려한 체험형 전시물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3) 모두를 위한 포용적 전시의 방향성과 다감각 체험 전시물의 적극적 도입
 - 4) 전시 연출을 위한 구조물(전시장 내·외부) 제작 설치 및 준공청소
 - 5) 전시 보조물(모형, 영상, 음향, 조형물 등) 디자인 및 제작·설치
 - 6) 전시 내외부 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설치(패널, 설명카드, 이미지 그래픽, 사인물 등)
 - 7) 전시 조명 등 관련 설비 설치
 - 8) 전시물 설치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모든 제반 사항: 자료 구입(사진, 영상, 음악, 글자체 등) 및 각종 장비 임대 및 설치 등
 - 9)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7. 전시 구성(안)

구분	주제 및 구성	현 공간
전시실 출입구 공간 연출		
1	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실 입구가 구조상 시야에 띄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한 입구 공간 디자인 및 연출 	
	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컨셉인 '숲'과 교감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마무리 디자인 연출 	
마중 공간		
2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와 전시가 있는 복합 마중 공간 조성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 	
	소통과 학습 공간	
3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를 통한 전시 주제 학습 공간 구성 소통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시물 제작 설치 	
	산과 땅속 체험(개미굴)	
4	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미굴 표면 디자인 개선으로 숲과 생태 환경을 기반한 체험 공간 연출 구성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미굴의 컨셉을 유지하되, 땅속 생태를 추가한 촉각 전시물 등 디자인 및 설치 연출 	
	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부 천장 연출(그물 및 조명) 개선 별자리 및 반딧불이 전시 연출 	

생태 주제 대근육 및 소근육 체험 전시물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거미줄 체험 공간의 노후화 부분을 보강하고 다른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새 주제 전시물을 활용한 공간 연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가동 중지 전시물(숲속의 레스토랑)을 대체하여 대근육 체험 공간(대규모) 제작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가동 중지 전시물(메아리)을 대체하는 전시 체험물 설치 및 공간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가동 중지 전시물(계곡 및 보트 체험)을 대체하는 전시 체험물 및 공간 연출 	

* 기본 설계 요소를 반영



1. 일반사항

- 1) 전시물과 제반 콘텐츠 등은 관련 규정에 적법하도록 설계한다.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하여야 한다.
- 2) 제안서 내용 및 발주처와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한다.
- 3) 피난 동선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소방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진출입 및 피난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4) 전시실 내부에 설치되는 자재와 설비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준공 시 소방필증(현장 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5)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6)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최상급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 7) 수행사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규격서, 공정표, 도면 등의 오류 및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8)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9) 시설 및 설비·구조물은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행동반경, 동선,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공간 배치를 하여야 한다.
- 10) 수행사는 제출한 제안도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 도중 제안도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 수정하여 작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 11) 성과품은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납품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12) 박물관의 위상에 맞는 품위 있는 전시 연출 계획을 수립한다.
- 13) 공공 문화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포용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전시물을 제작하고 전시 계획을 수립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정성, 단체관람객 관람 시의 안전성과 교육성, 외국인의 관람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14) 전시에 필요한 전기 설비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시공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 있다.
- 15) 기존 설비(전기, 통신, 방범, 공조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전에 발주처와 의논하여 시공하고 도면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 16) 내구성과 완성도가 높은 체험물을 제작하고 이동과 설치가 용이한 형태로 설계하며, 다양한 약자를 배려하여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한다.
- 17) 전시물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준하되 상세 공정 및 상이한 부분

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 18) 현장 여건에 따른 연출안 조정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처와 수행사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 19)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책임진다.
- 20) 전시물 설치를 위한 공간은 402.96㎡(약 112평)을 기준으로 한다.
- 21) 노무자 등 기타 출입인의 감시 및 풍기 위생 단속, 화재 도난 및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보관, 현장 청소 및 주변 정리에 유의한다.
- 22) 수행사는 창작된 모든 성과품과 최종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발주처에 양도하며,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를 소유/복사/외부 유출을 금한다.
- 23)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2. 전시물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1) 숲과 생태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을 제작하여 연출 효과를 높이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2) 관리와 운영,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 3) 어린이의 체험에 무해한 방향으로 제작한다. 시각 효과와 유지관리의 용이성, 내구성 등을 보장되도록 재질 및 형태, 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무독성 및 기타 안전성과 누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5) 제작 중 수정·변경하는 부분은 준공 도면과 내역서에 최종 반영하여 제출한다.

3. 전시 구조물 제작 및 설치

- 1) 전시구성(안)과 현장 요건, 어린이박물관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간별 주제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한다.
- 2) 조명, 음향,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전시 콘텐츠를 구현하도록 한다.
- 3) 관람 동선은 원활하며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단체 관람객이 쉽게 인지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4) 출입구와 전시실 내 통로의 폭은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자를 포함한 관람객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성한다.
- 5) 전시물, 장소 재현 및 기타 특수 제작물의 제작에 따른 저작권 협의 및 사용료, 자문료 등은 수행사에서 부담한다.
- 6) 사업 추진 중 전시물의 종류 및 수량을 가감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7) 전시물 제작·설치 중 변경되는 부분은 준공 도면 및 내역에 반영한다.

4. 전시 보조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 1) 전시 연출에 필요한 보조물(모형, 영상, 음향, 조형물 등)은 전시실 주제인 숲과 생태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감 있게 제작한다.
- 2) 전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적극 제작, 구입해야 하며, 이때 발주처의 요구 내용(수량, 방식, 품질 등)을 충분히 반영한다.
- 3) 영상 및 음향 하드웨어 설치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구조물을 제작 설치한다.
- 4) 영상 모니터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해야 한다. 영상물이 상영되는 모니터나 스크린 면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연 채광이나 간접채광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조명 및 조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 5) 모든 전시 콘텐츠 및 관련 자료(영상, 사진,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제안 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수행사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수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1) 전시장 타이틀, 전시 그래픽(패널, 레이블, 이미지 그래픽, 벽면 그래픽 등), 사인물 등 전시장 내·외부 모든 그래픽을 포함하여 콘텐츠에 맞는 최적의 방식으로 제작·설치해야 한다.
- 2) 이미지 사용 및 디자인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진다.
- 3) 서체 사용 시 가독성, 가시성을 고려하며 라이선스 문제가 없도록 한다.
- 4) 디지털 패널, 디지털 레이블(일반인, 전문가용) 등 새로운 방식 제안과 첨단 디스플레이 사용을 지향한다.
- 5) 이미지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6. 전시 연출을 위한 전기 및 조명 설비

- 1) 전시실의 분위기 연출 및 콘텐츠 구현을 위하여 최적화된 조명 계획(콘텐츠별 조명, 관리용 조명, 조도 기준, 구간별 조도 분포 등)을 수립하고 자문 및 감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2) 기존에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조명기기와 호환되도록 하며 전시물의 종류, 재질, 형상과 연출 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스템을 선택하고, 계획 시 연색성과 색온도 등을 반영한다.
- 3) 진열장 내부에 설치하는 조명은 콘텐츠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난반사나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4) 안정기는 KS 제품의 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배선 위치 및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지정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 시간에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플러그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7) 배선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게 정돈 설치되어야 한다.

7. 안전관리

1) 적용 범위

본 조항은 과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라 현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행사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 안전보건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행
- 사업비 중 전시공간 설계, 전시품 기획, 전시품 제작 예산의 1.38% 이상 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고, 전시품 설치 공사비의 2.07%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며, 그 사용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원용
-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 완료 시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장별 납입확인서 및 사용증빙서류를 같이 제출

3) 안전관리자의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수행사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고 사업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에 선임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4)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행사는 착수와 동시에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필요한 경우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행사는 작업자에게 매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 작업의 허가

안전관리자는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작업허가서를 작성제출하고 감독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허가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허가서 사본을 작업장에 비치한다.

6) 작업중지 요청

- 작업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 중

지를 요청하여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발주처의 조치사항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 비상 시 대피로와 비상 집결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 및 재해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법률준수의 의무

수행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관계법류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검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 1)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수한다.
- 2)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보완 또는 재이행 조치하여야 한다.
- 3) 검수 완료 후에도 수행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 수행사가 변상 조치한다.
- 4)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요청 후 48시간 내 복구 조치해야 한다.

9. 기타

- 1) 수행사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물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수행사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처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다른 방법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하고 그 비용을 수행사에 청구할 수 있다.
- 3)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행사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III

제안서 작성

1. 적용범위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를 따르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예규,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사업 감독의 권한

1) 사업 감독

감독관은 과업 진행 중 때때로 수행사에 대해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동원 현황

나. 영역별(공정별) 업무 수행 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점검

감독관은 사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행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수행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

3. 의 책임

1) 책임 한계

가. 감독관이 승인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행사의 귀책 사유로 일어난 모든 잘못에 대하여 수행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사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처의 부담으로 바르게 고쳐야 한다.

나. 이 과업으로 인하여 수행사가 제3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처가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행사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문서로 해야 유효하다. 단, 과업 수행 중 긴급한 상황에 의한 구두보고는 발주처 승인으로 나중에 문서 처리한다.

2) 지시 이행

감독관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수행사의 과업 책임자에게 지시했을 때 과업 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서명 날인한 뒤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 그에 따른 과업 지연 등의 책임은 수행사에 있다.

3) 공정관리

수행사는 과업 수행 중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늘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4) 문서의 기록 비치

수행사는 이 과업을 수행할 때 생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조사

수행사가 이 과업을 수행할 때 감독관이 조사 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제조사를 요구할 때 수행처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수행처는 부담으로 지급해야 한다.

6) 법규준수 의무

수행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생긴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1) 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관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및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나.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그 밖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5. 제출물

- 1) 수행사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 사항과 맞는지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 2) 감독관은 원활한 과업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과업 내용서에서 밝히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3) 수행사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곧 다시 만들어 내어야 한다.
- 4) 수행사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및 보고회 등과 관련된 관련자료(회의록 등)를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한다.
- 5) 수행사가 낸 서류가 계약에 어긋날 때 수행사는 감독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6. 착수신고서 제출

수행사는 계약 즉시 과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7일 이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과업책임자 선임계

다. 과업책임자 사용인감계

라. 과업책임자 및 분야별 과업참여자 이력서

마. 예정공정표

바. 인력투입계획서

사.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자.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7. 자문

- 1) 감독관은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2)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자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관계기관 협의, 회의 및 자문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 1) 수행사는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과업 착수계와 함께 수행사 및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를 수행사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가 바뀔 때에도 또한 같다.
- 2) 수행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3) 보안상 결함 및 보안 사항 불이행에 의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지며, 기타 과업 수행 과정의 보안 사항 이행은 발주처의 보안 관련 규정 등을 따른다.

9. 과업 중지

수행사가 책임질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때문에 과업의 계속 추진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0. 계약의 해제, 해지

- 1)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까닭 없이 정한 착수기일이 지나도 과업에 착수치 못한 때
나. 계약서상 과업 수행 기한 내 과업을 끝내지 못하거나,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그 밖의 계약조건을 어겨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1. 보고서 작성

- 1)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고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2) 소유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공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가진다.
나. 수행사는 준공 때 성과품을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 모든 성과품(내용 포함)은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에 제공 또는 빌려줄 수 없다.

12. 용역 완료 및 정산

- 1) 용역 이행 대가는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발주처의 검수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행사는 기성금(선금) 청구 시 발주처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선금급 사용 시 소요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지출 이외의 금액은 바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자문비 지급증 등 실제로 사용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IV

제출 성과물

연번	구 분	규격	수량	비 고
1	완료계	-	1부	수행사에 서식 별도 송부
2	설계도면	A3	2부	평면도, 최종 설계도면, 전기배선도 등
3	설계내역서	A4	2부	설계설명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견적서 등
4	품질 인증서류 일체	-	2부	방염, 방진방수 등 본 과업 관련 법적 요건 인증 서류
5	설명패널, 그래픽 원본 파일	USB	2식	디자인 파일 및 PDF 파일
6	기타 본 사업 관련 내용			사업 수행 중 산출된 자료 일체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